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0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8.

발 의 자:김태년 이훈기 · 황명선

손명수 · 박용갑 · 전현희

정준호 · 임호선 · 김영진

김영배 · 김한규 · 이학영

전진숙 • 이기헌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·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다양한 중·소기업 사업주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하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,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중·소기업 사업주 등의 폭넓은 산재보 험 가입 지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.

이에 현행 규정에서 중·소기업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

촌 이내의 친족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중·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124조).

법률 제 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4조제1항 중 "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"을 "자기 또는 유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"를 "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"신청 및 승인"을 "신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4조(중・소기업 사업주등에	제124조(중・소기업 사업주등에		
대한 특례) ① 대통령령으로	대한 특례) ①		
정하는 중・소기업 사업주(근			
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			
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			
같다)는 <u>공단의 승인을 받아</u>	<u>자기 또는 유족</u>		
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			
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			
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			
② 제1항에 따른 중・소기업	②		
사업주의 배우자(사실상 혼인			
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			
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4			
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			
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			
해당 사업에 <u>노무를 제공하는</u>	노무를 제공하는 사람		
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	<u>\odolor</u>		
험에 가입할 수 있다.			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		
⑧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	8		
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료의			
산정, 보험 가입의 <u>신청 및 승</u>	<u>신청</u>		
인,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, 보			

험 관계의 소멸, 그 밖에 필요	
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	
정하는 바에 따른다.	